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개정 전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 2) 법 제22조를 인용한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1호의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 3)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전담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적정성을 3년 마다 재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전담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 (생략)	제7조의3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 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 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 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적정성을 3년 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생 략)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 음)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1. 법 제22에 따른 미수금의 대 지급에 관한 사무	1. 법 제22조----- -----
2. (생 략) ②·③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8